

### III.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주요 회계정책

홍성군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은 지방회계기준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중요성의 관점에 따라 준수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 재정운영표의 공시사항의 변경

홍성군은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 1-2.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기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표시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는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 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의 과목과 지방회계기준의 과목이 불일치하는 것은 지방회계기준의 적절한 과목으로 재분류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과목체계를 준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과목 체계에 의한 원가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에 제시하였습니다.

### 1-3. 지방회계기준 시행일 현재의 자산·부채 평가

지방회계기준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부채는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임목은 모두 대체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취득 원가 확인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체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1-4. 출납폐쇄기간 중 발생한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및 동향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19회계연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20회계연도의 거래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2019 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자산·부채 또한 출납폐쇄기한(「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본문) 및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의 경우 1월 20일까지 발생한 거래를 반영한 수치로 표시됩니다.

#### 1-5.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간의 자금의 전출입, 출자 등 지방자치단체내의 거래를 말합니다. 흥성군은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의 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8에 제시하였습니다.

#### 1-6. 수익인식기준

##### 가. 교환거래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수익을 인식합니다.

##### 나. 비교환거래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지방세수익(비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임시세외수익의 경우 「지방세수익」에 준하여 인식합니다)은 흥성군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 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은 중앙정부가 홍성군에 대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보조·분담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교부확정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 1-7. 재정자금의 표시

회계연도종료일 현재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등의 자금(이하 “재정자금”)은 취득(가입)시점과 만기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며,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흰매체 등)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종료일 현재 홍성군의 재정자금은 출납폐쇄기간 동안 발생한 자금 거래가 반영된 후의 수치입니다.

## 1-8. 미수세금 등의 평가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장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은 세목별(장단기대여금의 경우 종류별)로 과년도와 현년도 구분, 과거 결손처분 경험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등의 채권에서 치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 중 중앙정부 또는 타지방 지자체에 대한 채권인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1-9.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1-10.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종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증권 취득 후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피투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1-11.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방법

### 가. 재무제표 표시

유형자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을 말하며,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합니다.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성격을 가진 개별자산을 해당 주민편의시설(예: 도서관) 및 사회기반시설(예: 도로)에 각각 일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나. 평가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유형자산 취득 후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다.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정률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치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적용된 각 자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으며,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은 물품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은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역	내용연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인 것	40년
건물·구축물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인 것	2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10년~3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20년~30년
	위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구축물	5년
[기계장치]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물품관리지침 준용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1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것	15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것	5년
	위에 속하지 않는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물품관리지침 준용
	선박 및 항공기	12년
	위에 속하지 않는 차량운반구	5년
집기비품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물품관리지침 준용
	위에 속하지 않는 집기비품	5년
기 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	5년

#### 라. 감가상각 제외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며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취득 후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지출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취득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인 도로, 하천부속시설, 농로·소류지·방조제 등의 농수산기반시설, 사방댐 등의 댐, 마을안길·마을교량 표장 등의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마.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유지보수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며, 능률유지 또는 손상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출은 전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1-12. 무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방법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상각시 각 자산별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구분지상권(존속기간이 사실상 영구인 것에 한합니다)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역	내용연수
지적자산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년
	특허권	10년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개발비	3년
용익물권	지상권, 구분지상권(존속기간이 유한한 것)	용익물권 존속기간

한편, 무형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 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1-13. 퇴직금여충당부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일용인부, 예출단원, 운동부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퇴직금 추계액을 말하며,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것을 치감한 것입니다.

### 1-14. 관리책임자산

#### 가. 정    의

관리책임자산이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핍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관리책임자산 중 유산자산은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산 중 자연자원은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매장량, 공원(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나. 회계처리 등

관리책임자산은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측정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산의 내역은 필수보충정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1-15.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학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재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 ①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 ②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 ③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 1-16. 리스트

### 가. 금융리스와 윤용리스의 분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흥성군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윤용리스로 분류합니다.

### 나.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공정가액과 기본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액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과 리스이자비용으로 구분하고, 리스이자비용은 매 기간 리스부채 잔액에 대한 비율이 동일하도록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 다. 윤용리스의 회계처리

윤용리스의 경우에는 기본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1-17.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18.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 가. 회계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나. 오류수정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 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중대한 오류 :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중대한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 ② 중대하지 않은 오류 :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 **1-1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회계처리**

### **가. 정 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매입·매각하거나 계획기간 내 차입·이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나.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시장을 통해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정부에 제출, 매각, 그 밖에 경제적 효력이 상실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 **다.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지자체단체가 당해 이행연도의 무상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배출부채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는 때 제거됩니다.

## **1-20. 회계처리특례**

현금흐름표(지방회계기준 제35조) 및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지방회계기준 제56조)는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2.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 2-1. 회계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A)	보통예금등	28,053,409,265	5,541,408,035	14,832,902,677	5,686,477,314	54,114,197,291
단기금융상품 (B)	정기예금등	83,000,000,000	235,999,390	49,473,894,436	1,900,000,000	134,609,893,826
장기금융상품 (C)	정기예금등	-	-	-	-	-
계(A+B+C)		111,053,409,265	5,777,407,425	64,306,797,113	7,586,477,314	188,724,091,117

### 2-2.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구분

(단위 : 원)

구 分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재정지급(제)계잉여금 총액(A)	111,053,409,265	5,777,407,425	64,306,797,113	7,586,477,314	188,724,091,117
이월금(B) 명시이월비	18,454,497,400	548,083,650	-	72,690,000	19,075,271,050
사고이월비	10,326,525,380	-	263,979,290	196,571,000	10,787,075,670
계 속 비	36,706,368,190	3,665,787,830	-	911,924,180	41,284,080,200
보조금 실제반납금	9,881,851,442	-	6,012,319	196,949,960	10,084,813,721
순세계잉여금(A-B)	35,684,166,853	1,563,535,945	64,036,805,504	6,208,342,174	107,492,850,476

### 3.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채권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보통세	미 수 주 민 세	57,690,650	6.57	3,791,430
	미 수 제 산 세	681,958,380	7.14	48,698,684
	미 수 차 동 차 세	780,259,040	7.51	58,558,441
	미수지방소득세	1,053,123,050	33.12	348,836,479
계	2,573,031,620	17.87	459,885,034	2,113,146,586

### 4.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 4-1. 미수세외수입금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미수재산임대료수익	119,879,533	-	-	-	119,879,533
미 수 사 용 료 수 익	58,823,710	122,160	-	407,002,420	465,948,290
미 수 수 수료 수 익	27,549,870	-	-	-	27,549,870
미 수 사 업 수 익	140,414,400	27,480	-	-	140,441,880
미 수 부 담 금	23,734,060	-	-	-	23,734,060
미 수 변 상 금	5,438,130	-	-	-	5,438,130
미 수 과 태 료	2,000,054,426	442,718,050	-	-	2,442,772,476
미 수 과 징 금	30,494,000	585,697,080	-	-	616,191,080
미 수 이 자 수 익	365,919	62,908,380	1,624,621	-	64,898,920
미수기[티임시]세외수수익	2,090,841,057	-	-	-	2,090,841,057
계	4,497,595,105	1,091,473,150	1,624,621	407,002,420	5,997,695,296

## 4-2. 대출충당금

(단위 : 원)

구 분	금액(A)	대출설정율(%)	대출충당금(B)	장부기액(A-B)
미 수재 산임대료수익	119,879,533	2.76	3,308,675	116,570,858
미 수사 용료수익	465,948,290	22.96	106,971,071	358,977,219
미 수수수료수익	27,549,870	1.00	275,499	27,274,371
미 수사업수익	140,441,880	1.00	1,404,419	139,037,461
미 수부담금	23,734,060	1.00	237,341	23,496,719
미 수변상금	5,438,130	1.00	54,381	5,383,749
미 수과태료	2,442,772,476	9.42	230,173,324	2,212,599,152
미 수과정금	616,191,080	2.72	16,738,145	599,452,935
미 수이자수익	64,898,920	1.00	648,989	64,249,931
미수기타임지세외수익	2,090,841,057	2.64	55,260,929	2,035,580,128
계	5,997,695,296	6.92	415,072,773	5,582,622,523

## 5. 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

### 5-1. 원금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계
민간 대여금	단기민간융자금	-	64,981,740	131,663,333
	장기민간융자금	-	2,089,615,758	371,660,000
	소계	-	2,154,597,498	503,323,333
학자금위탁대여금	3,398,957,620	-	-	3,398,957,620
계	3,398,957,620	2,154,597,498	503,323,333	6,056,878,451

### 5-2. 민간대여금 관련 이자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계
미 수이자수익	365,919	62,908,380	1,624,621	64,898,920
일반미수금	-	-	-	-
계	365,919	62,908,380	1,624,621	64,898,920

## 6. 재고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판 매 용 물 품	845,767,540	-	-	845,767,540
자 장 품	8,470,910	-	174,265,330	182,736,240
계	854,238,450	-	174,265,330	1,028,503,780

## 7.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미 수 수 액	807,053,425	1,434,420	212,731,662	1,412,049	1,022,631,556
선 급 비 용	160,564,563	-	-	-	160,564,563
세 입 세 출 외 단기보관현금	981,396,255	-	-	575,384,705	1,556,780,960
기타유동자산	21,348,740	-	-	-	21,348,740
계	1,970,362,983	1,434,420	212,731,662	576,796,754	2,761,325,819

## 8. 기타투자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내부거래	계
회 원 권	585,468,000	-	585,468,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자 분 전 출 금	119,492,521,449	△ 119,492,521,449	-
계	120,077,989,449	△ 119,492,521,449	585,468,000

## 9. 유형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일반유형자산	<b>66,814,461,463</b>	<b>2,985,250,540</b>	-	-	<b>69,799,712,003</b>
주 차 장	7,942,273,940	15,161,952,880	-	-	23,104,226,820
공 일	141,437,203,230	97,375,520	-	-	141,534,578,750
박물관 및 미술관	1,123,554,630	-	-	-	1,123,554,630
수목원 및 휴양림	11,940,910,582	-	-	-	11,940,910,582
주민 편의 시설	58,602,845,327	6,866,570	-	-	58,609,711,897
체육 시설	7,197,984,555	-	-	-	7,197,984,555
사회복지시설	12,450,462,202	-	-	-	12,450,462,202
의료 시설	1,687,191,068	38,225,880	-	-	1,725,416,948
기타주민편의시설	48,388,298,324	1,827,653,140	-	-	50,215,951,464
<b>소계</b>	<b>290,770,723,858</b>	<b>17,132,073,990</b>	-	-	<b>307,902,797,848</b>
도로	267,458,815,628	8,852,868,760	-	-	276,311,684,388
도시 철도	94,563,000	-	-	-	94,563,000
상수도시설	1,983,956,710	-	-	3,452,936,570	5,436,893,280
수질정화시설	3,016,045,608	-	-	4,756,131,830	7,772,177,438
하천부속시설	35,973,810,996	76,041,230	56,884,600	-	36,106,736,826
기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1,046,749,290	-	-	1,046,749,290
농수산기반시설	1,059,326,890	-	-	-	1,059,326,890
어항 및 항만시설	881,333,230	-	-	-	881,333,230
기타사회기반시설	5,779,147,050	20,100,412,450	3,816,630	-	25,883,376,130
<b>소계</b>	<b>317,293,748,402</b>	<b>29,029,322,440</b>	<b>60,701,230</b>	<b>8,209,068,400</b>	<b>354,592,840,472</b>
<b>계</b>	<b>674,878,933,723</b>	<b>49,146,646,970</b>	<b>60,701,230</b>	<b>8,209,068,400</b>	<b>732,295,350,323</b>

## 10. 일반유형자산에 포함된 일반재산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일반재산토지	66,814,461,463	2,985,250,540	-	-	69,799,712,003
토지를 제외한 일반재산	148,315,931,781	383,222,270	477,587,160	-	149,176,741,211
△감: 감가상각누계액	△69,577,144,887	△246,519,313	△326,041,854	-	△70,149,706,054
계	145,553,248,357	3,121,953,497	151,545,306	-	148,826,747,160

## 11.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 상각자산의 내역

### 11-1. 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도로	787,794,755,155	416,045,170	181,533,810	-	788,392,334,135
하천부속시설	107,880,478,384	-	3,407,717,300	-	111,288,195,684
농수산기반시설	214,013,660,386	2,720,000	14,919,000	-	214,031,299,386
댐	3,440,370,350	-	-	-	3,440,370,350
어항및항만시설	28,833,755,110	-	199,581,400	-	29,033,336,510
기타사회기반시설	187,911,269,452	982,048,120	720,867,560	-	189,614,185,132
계	1,329,874,288,837	1,400,813,290	4,524,619,070	-	1,335,799,721,197

### 11-2. 주선유지비용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도로	7,174,274,980	28,729,000	-	-	7,203,003,980
하천부속시설	506,017,350	-	165,880,590	-	671,897,940
농수산기반시설	1,409,439,700	-	-	-	1,409,439,700
어항및항만시설	149,304,080	-	-	-	149,304,080
기타사회기반시설	13,148,719,010	92,556,830	93,054,400	-	13,334,330,240
계	22,387,755,120	121,285,830	258,934,990	-	22,767,975,940

## 12. 무형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지적재산권	14,739,511	-	-	-	14,739,511
전산소프트웨어	1,631,917,157	4,628,000	1,000	126,913,300	1,763,459,457
용역물권	854,000,000	-	-	-	854,000,000
건설중인무형자산	105,000,000	-	-	-	105,000,000
계	2,605,656,668	4,628,000	1,000	126,913,300	2,737,198,968

## 13. 기타비유동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제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40,904,710	-	-	-	40,904,710
기타유산자산	1,429,904,142	-	-	-	1,429,904,142
기타생물자산	89,246,700	-	-	-	89,246,700
기타비유동자산	39,234,000	-	-	385,077,500	424,311,500
계	1,599,289,552	-	-	385,077,500	1,984,367,052

## 14. 기타유동부채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일반미지급금	9,881,851,442	-	6,012,319	286,000	9,888,149,761
선수금	192,135,100	-	-	-	192,135,100
선수수익	87,555,101	-	-	-	87,555,101
단기예수보관금	981,396,255	-	-	575,384,705	1,556,780,960
일반미지급비용	-	-	-	13,028,320	13,028,32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	-	3,879,237,422	3,879,237,422
계	11,142,937,898	-	6,012,319	4,467,936,447	15,616,886,664

## 15.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설정대상인원수(명)	134	4	-	138
전년도말 퇴직금추계액(A)	3,980,642,362	276,854,304	-	4,257,496,666
당기 퇴직금지급액(B)	1,292,775,400	-	-	1,292,775,400
당기 퇴직금여설정액(C)	674,197,898	13,867,475	-	688,065,373
계(A-B+C)	3,362,064,860	290,721,779	-	3,652,786,639
△차감 :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167,289,980	△13,429,320	-	△180,719,300
△차감 전액	3,194,774,880	277,292,459	-	3,472,067,339

## 16. 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장기 예수보증금	40,904,710	-	-	-	40,904,710
기타장기미지급금	-	-	-	56,733,988,443	56,733,988,443
기타비유동부채	101,105,299	-	-	-	101,105,299
계	142,010,009	-	-	56,733,988,443	56,875,998,452

## 17. 순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순자산총계(A)	2,635,842,971,497	66,359,604,550	70,534,679,469	197,061,489,578	△119,482,521,449	2,850,306,233,645
일 유 형 자 산	145,553,248,357	3,121,953,497	151,545,306	-	-	148,826,747,160
주 민 편 의 사 설	450,779,712,926	19,477,639,314	21,259,964	-	-	470,278,612,204
사 회 기 반 시 설	1,806,117,631,037	35,040,224,413	5,348,458,268	249,112,489,930	-	2,095,618,803,648
무 형 자 산	2,605,656,668	4,628,000	1,000	126,913,300	-	2,737,198,968
소계(B)	2,405,056,248,988	57,644,445,224	5,521,264,538	249,239,403,230	-	2,717,461,361,980
시 설 유 동 성 기 타 장 기 금 금 금	-	-	-	3,879,237,422	-	3,879,237,422
특 자 기 타 장 기 미 지 금 금 등	-	-	-	56,733,988,443	-	56,733,988,443
관 련 자 입 금	소계(C)	-	-	60,613,225,865	-	60,613,225,865
고정순자산 (D=B-C)	2,405,056,248,988	57,644,445,224	5,521,264,538	188,626,177,365	-	2,656,848,136,115
특정순자산(E)	-	-	65,013,414,931	-	-	65,013,414,931
일반순자산 (A-D-E)	230,786,722,509	8,715,159,326	-	8,435,322,213	△119,482,521,449	128,444,682,589

## 18. 내부거래의 내역

### 18-1. 전출금(비용) 및 전입금(수익)

(단위 : 원)

전출금 ▼	전입금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	7,927,730,000	4,363,775,000	-	12,291,505,000
기타특별회계		15,699,237,110	-	-	-	15,699,237,110
기 금		-	-	-	-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	-	-	-
계		15,699,237,110	7,927,730,000	4,363,775,000	-	27,990,742,110

### 18-2.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의 자본거래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누계)	119,492,521,449			119,492,521,449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당기분)	8,782,390,000			8,782,390,000

## 19. 우발채무 등

### 19-1. 계류증인 소송사건

(단위 : 원)

발생연도	소송가액있음		소송가액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개성액	내역
2017년	34,533,333	시설분담금부과 처분 무효확인	34,533,333	
2019년	468,432,928	지적정지처분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와	61,796,966	
2020년	8,302,289,069		-	
제	8,805,255,330		96,330,299	

## 20.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기 태유동자산	세 입 세 출 외 단기보관현금	981,396,255	-	-	575,384,705 1,556,780,960
기타비유동자산	세 입 세 출 외 장기보관현금	40,904,710	-	-	40,904,710
계		1,022,300,965	-	-	575,384,705 1,597,685,670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 중인 현금으로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1.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정보

(단위 : 원)

구 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 · 정 수 구 입 비	5,018,402,990	-
액 품 · 지 료 비	225,947,580	-
일 반 운 영 비	315,407,447	180,656,100
인 력 운 영 비	955,874,878	178,530,560
영업비용		
감 가 상 각 비	4,763,346,019	7,183,347,147
수 선 교 채 비	1,913,519,550	377,020,190
민 간 위 탁 비	-	4,808,212,960
기 타 영 업 비 용	492,183,863	1,186,626,250
소 계	13,684,682,327	13,914,393,207
영업외비용		
기 타 영 업 외 비 용	48,761,330	2,860,040
계	13,733,443,657	13,917,253,247